

규정/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

관련 항목: ABA, ABA-RB, BBB, CNA-RB, CND, CND-RA, COB-RA, GCA-RA
 책임 사무실: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(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)

학교 부지 내와 인근 점포(Vendors On or Near School Premises)

I. 목적

이 규정은 학교 건물에서 학기 중의 판매활동을 포함한,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 소유지 내 또는 인근에서 승인되지 않은 판매/상업활동에 관한 절차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II. 행정절차

- A. 판매자는 공공 도로 또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인근 500 피트 이내에서 특별 행사를 위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판매 또는 판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 MCPS 가 관리하지 않은 카운티 또는 지방정부가 승인한 규정을 또한,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B. 학기 중 MCPS 학교 건물에서 교직원, 학생, 학교 커뮤니티 일원과의 영업을 원하는 판매자는 학교장/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C. 학교장은 학교 소유지와 학교 내에서의 판매활동에 관해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에 안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학교장은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BBB, *Ethics*, MCPS Regulations CNA-RB, *Advertising*, GCA-RA, *Conflict of Interest* 관련된 고려를 해야 합니다.
- D. 학교장의 승인 없이 모든 형태의 판매 시도는 학교장/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떠나야 합니다.
- E. 개인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기 거부할 경우, 학교장/대리인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

- F. MCPS Regulation COB-RA, *Reporting a Serious Incident* 에 명시한 바에 따라 후속 보고를 제출합니다.

관련 자료: *Montgomery County Code, §47-2, Hours and places of operation; Code of Montgomery County Regulations, §47.02.01.05.2(a)(10), §47.02.01.05.2(b)(3) 와 §47.02.01.05.3(c)(6)*

규정변경사: 이전 규정 번호 270-3, 1974 년 10 월 4 일; 1989 년 검토; 1995 년 5 월 15 일 갱신; 이전 규정 COD-RA; 2008 년 10 월 14 일 갱신; 2018 년 4 월 16 일 갱신.